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7

발의연월일: 2020. 6. 16.

발 의 자:임종성·송갑석·윤후덕

기동민 · 김진표 · 김종민

김철민 · 윤관석 · 소병훈

홍성국 · 송옥주 · 민홍철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개발·보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, 첨단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와 함께 기계 중심에서 벗어나 전자, 정보통신,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융합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임박하였음.

그런데, 현행의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친환경·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, 이러한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,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기술·기기의 연구·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수립하는 '자

동차정책기본계획'에 환경친화적 자동차·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의 마련과 자동차검사기술·기기의 연구·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이러한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에 필요한 자동차검사기술·기기의 연구·개발을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체계를 첨단화시키려는 것임(안 제4조의2제2항제4호의2 및 제43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기술·기기의 연구·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

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3(자동차검사 관련 연구·개발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제2호의 자동차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검 사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검사기술·기기의 연구·개발 및 자동차검 사기술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·개발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·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4조의2(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제4조의2(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 <신 설> 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기술·기기의 연구·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 5. (생략) 5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생 략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43조의3(자동차검사 관련 연구· 개발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(「환경친화 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 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의 자동차를 말한다. 이하 같 다)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 검사기술·기기의 연구·개발 및 자동차검사기술의 보급이 필요

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수행하게할 수 있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·개발을 수행하게 하 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 구·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